

의안번호	2209820
의 퇴 인	서지영 의원
회 답 일	2025.07.10.
추계번호	25C2179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2.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디지털 기반 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의 확보·유지관리 4. 그 밖에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2	안 제6조 (조사·연구·분석)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 또는 위탁 전문기관·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3	안 제7조 (디지털 역량 교육)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4	안 제9조 (교원 연수)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이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역량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5	안 제11조 (과견근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연구 및 교수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을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2조 (포상 등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교수학습 활동 성과가 뛰어난 교원 및 학교에 대하여 포상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13조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제1항)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5조 (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지원 및 대응 관리 체계 2. 장애관리 체계 3.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등 변경 관리 4. 그 밖에 디지털교과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7조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지원)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공교육 활성화 기여 수준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21조 (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제1항)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1	안 제22조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제3항) 교육부장관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 (조사·연구·분석) 안 제7조 (디지털 역량 교육) 안 제9조 (교원 연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1조 (과견근무) 안 제12조 (포상 등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3조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안 제15조 (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등) 안 제17조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21조 (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안 제22조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임
 - 교육부는 '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및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을 통해 '25년부터 영어, 수학 등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28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과목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후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 바 있음
 - － 국고,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합한 총 예산 규모는 '23년 9,053억원, '24년 1조 3,987억원임
 - ＊ [참고자료 1]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
 - 현재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교육부는 당초 계획에 따른 전면 도입을 일시 유예한 상태임
 - － 교육부는 '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학교별 자율 선택에 위임하였으며, 1학기 기준 3,849개교(32.3%)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음
 - ＊ [참고자료 2]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학교 현황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편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 취지의 사업이 이미 존재하여 사업 확대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원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안 제5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따른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 '23년부터 디바이스 구매, 네트워크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5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6,205억 7,400만원이 편성됨
 - (안 제6조 및 제7조)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등이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조사·분

석 대상 및 역량교육의 내용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산출이 곤란함

- (안 제9조)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가 실시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24년부터 교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는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 편성된 상태임
 - 교육부는 '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기초하여 우수사례 도출을 위한 선도학교와 선도교원을 선정한 바 있음
 - 아울러, '24년부터 특별교부금을 통해 교원의 연수를 지원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585억 4,900만원이 투입됨
- (안 제11조 및 제12조)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등이 인력을 파견하고 포상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파견 인원, 포상 금액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
- (안 제13조 및 제15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교과서의 개발·보급,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기술심사시스템 구축 등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교육부는 '23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디지털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위탁되어 운영됨
 - 한편, 교육부는 검정심사 시 개발사의 자체 품질관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기마다 검정교과서의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관리하는 등 디지털교과서의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참고로, '25년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기술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7억 9,700만원임
- (안 제17조) 제정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의 대상,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산출이 곤란함

- (안 제21조 및 제22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습데이터 관리를 위한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4년 조달청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을 입찰공고 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추정소요예산은 807억 8,400만원임
 -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5년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편성된 상태이며, 그 규모는 298억 9,800만원임
- 이에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내역	'23년	'24년	'25년
국 고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	886	797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서책형 교과서 및 AIDT 포함)	-	-	3,947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 국립부설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	400	-
	국립학교 인프라 구축	1,721	1,635	4,200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	-	1,877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	500	1,010
	소 계	1,721	3,421	8,969
특 별 교 부 금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1,128	17,364	22,487
	통합지원센터, 공공교육콘텐츠 제공 등 개발 지원	228	13,270	9,187
	기술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529	5,000
	수정보완체계 구축 및 운영	-	600	8,000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개발	900	965	30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32,200	70,519	39,15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지원	30,200	68,150	38,25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단 운영	2,000	2,369	900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	-	40,600	29,898
	T.O.U.C.H. 교사단 양성	3,000	-	-
	교사 대상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연수 등	-	329,230	329,319
	교원연수 기반 질관리 체계 구축		44,840	37,730
	AIDT 적용교원 연수운영 및 선도교사 그룹 연수 지원		154,607	93,289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42,483	69,90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87,300	128,400
	AI 디지털교과서 대비 학교 인프라 운용 지원	-	4,312	2,790
	디바이스 테스트랩 구축·운영		412	1,080
	학교 네트워크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운영		3,900	1,710
	소 계	36,328	462,025	423,644

보 통 교 부 금 등	디바이스 구매	789,425	854,057	326,212
	네트워크 확충	77,835	79,290	287,372
	AIDT 보급비	—	—	미정 ¹⁾
	소 계	867,260	933,347	613,584
총 계		905,309	1,398,793	1,049,059

주: 1) '25년 자율선정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편성 및 확정 예정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학교 현황

(단위: 개교)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학교수	11,921	1,317	636	466	534	313	303	244	105
선정 학교수	3,849 (32.3%)	318 (24%)	221 (35%)	458 (98%)	108 (20%)	36 (12%)	60 (20%)	36 (15%)	8 (8%)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학교수	2,525	626	469	728	762	823	910	971	189
선정 학교수	1,099 (44%)	304 (49%)	209 (45%)	183 (25%)	156 (21%)	72 (9%)	406 (45%)	97 (10%)	78 (41%)

자료: 교육부, 2025.2.17 기준